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외 장

제19호 2017. 5. 12(금)

공고

- 남원시 공고 제2017-713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 1
- 남원시 공고 제2017-715호 도로공고(변경) ----- 4
- 남원시 공고 제2017-721호 공시송달공고(2월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 5
- 남원시 공고 제2017-722호 공시송달공고(4월분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 7
- 남원시 공고 제2017-723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7-713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 숙박시설·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운영 시간 : 연중무휴
- 시설 이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나. 숙박시설 및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12조)

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6조)

- 수탁자의 선정, 의무 및 행위제한, 지도감독

다. 시설 이용료 (안 별표 1)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공휴일	
숙박시설	커플실	4실	2명	80,000	100,000	
	가족실	1실	4명	100,000	120,000	
	단체실	1실	8명	200,000	220,000	
캠핑장	면	30면		20,000	20,000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과 백두생태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3-620-6715), 이메일(cheesedog@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063-620-5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7 - 715 호

도 로 공 고(변경)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1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2016-3 1	남원시 신촌동 129	정*애	2016-건축과- 신축신고-480	29	5.89	171	남원시 신촌동 산 7-2	남원시 신촌동 128-1	대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 및 면적변경

남원시 공고 제2017 - 7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0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2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5. 12 ~ 2017. 5. 26.
3. 납부기한 : 2017. 5. 31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김*수	75****-*****	140002-2017-02-2-****-26	405,510	수취인미거주	2017. 5. 31

남원시 공고 제2017 - 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2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5. 12 ~ 2017. 5. 26.
3. 납부기한 : 2017. 5. 31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지*산약*영 농**법인	21****-*****	140003-2017-04-2-***-20	2,079,370	수취인불명	2017. 5. 31
농*회*법인 자연*곡*합 미*처리장	21****-*****	140003-2017-04-2-***-19	2,162,420	이사감	2017. 5. 31
성**업	21****-*****	140003-2017-04-2-***-18	734,190	이사감	2017. 5.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30	302,570	폐문부재	2017. 5.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29	12,810	폐문부재	2017. 5.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28	16,870	폐문부재	2017. 5. 31

남원시 공고 제2017 - 723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남 원 시 장

1. 조례명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리산 대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인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허브밸리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나.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8조)

- 개장,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 등

다. 허브밸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안 제27조)

- 수탁자선정, 위탁기간, 협약체결,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

라.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8조~안 제36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4.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0. ~ 5. 30.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허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5) 및 직접방문 등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허브과(☎063-620-6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6.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원예허브과장

1. 개정이유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리산 대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인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허브밸리의 위치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나.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8조)
 - 개장,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 등
- 다. 허브밸리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안 제27조)
 - 수탁자선정, 위탁기간, 협약체결,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
- 라.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8조~안 제36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 다. 비용추계서 : 별첨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운봉읍 바래봉길 2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브밸리”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관람구역 입장·주차장 내 주차·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2호의 시설사용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입장료·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객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
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구걸·행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료 징수) 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

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 신청 절차 등) ① 시설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
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신청자 명의로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주말·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납부의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사용자의 구조변경) 시설사용자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변경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금지)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허브밸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점
2. 식당, 매점, 간이휴게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허브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운영

제19조(위탁)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허브밸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허브밸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수탁자와 그 관련 사항
2. 위·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

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
3.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의무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권한의 양도나 전대 행위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4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 받으려면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허브밸리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에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한 시설물 등

과 재산의 파손·분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성실한 조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제2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브밸리의 관리·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 관광 업무담당 과장, 운봉읍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허브·식물·조경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경영·회계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자이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또는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허브밸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36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
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에 따라 선 정된 수탁자
와 그에 따른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입 장 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개인	단체	비 고
어 른	6,000원	4,000원	○ 개인 -어 른 : 아래의 개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군 인	4,000원	3,000원	-청소년 :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사람 과 중·고등학생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어르신 어린이	2,000원	1,500원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 :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 과 초등학교
영 아	무 료		-영 아 : 보호자를 동반한 만 2세 미만까지의 사람 ○ 단체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함(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료)

[별표 2]

입장료 감면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및 민주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 남원시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3일 이내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3일 이내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따로 정함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100% 감면대상자도 반드시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3]

입장료 환불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환 불 대 상	환 불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귀책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 입장하기 전에 구매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입장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100%

[별표 4]

주 차 료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미만) 화물자동차(총중량 2.5톤 미만)	그 밖의 자동차
입차 후 5시간 이내로서 - 최초 20분 이내 - 기본 : 최초 20분 초과 50분 이내 - 추가 : 매 10분 이내	무 료 1,000원 200원 추가	무 료 2,000원 400원 추가
5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6,000원	12,000원

※ 상기 요금은 입차 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한다.

[별표 5]

주차료 감면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 차량 ○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 출차 당일에 해당하는 허브밸리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그 밖에 행사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인식표를 부착하고 출입하는 차량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차량 ○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단, 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정한다)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따로 정함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6]

시설사용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원형광장 무대	30,000원/시간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소공연장 무대	10,000원/시간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그 밖의 시설 중 시장이 이용을 인정하는 시설	사용면적(m ²)×개별공시지가(원/m ²)×50/1000×사용일수/365	1. 토지에 한정함 2.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3.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되 지 않았으며 별도 협의

[별표 7]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위약 및 배상, 환불 기준
예약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사용일 5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 ~ 4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사용일 1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3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시장의 귀책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사용일 5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 ~ 4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사용일 1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제6조제2항 관련

(앞 면)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영수증)</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사진』</p>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수 표)</p>
<p>남 원 시 장 (직 인)</p>		

(뒷 면)

<p>『지리산허브밸리 CI』</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안내도』</p> <p>※ 본 입장권의 효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일 허브밸리 입장에 한정 2. 당일 입장권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시 : 주차료 무료 3. 3일 이내 입장권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체결된 시 다른 관광지 이용시 : 입장료 100분의 50 할인 - 협약 체결된 타 지역 관광지 이용시 : 입장료 100분의 20 할인 	
<p>남원시청 원예허브과 (55717) 전북 남원시 운봉읍 아래봉길 209 Tel 063-620-4891 FAX 063-620-6745</p>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사용내역 (변경내역)	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목적			
그 밖의 시설 등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